

[#붙임 1]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2단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96-1(영종하늘도시 A20BL)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0층 6개동 총 516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				
민영주택	084.9770A	84A	84.9770	25.6936	110.6706	63.9579	174.6284	373	37
	084.9081B	84B	84.9081	26.2165	111.1246	63.9060	175.0306	20	2
	084.8156C	84C	84.8156	26.6644	111.4800	63.8364	175.3164	38	3
	084.6387D	84D	84.6387	25.8505	110.4892	63.7033	174.1924	20	2
	114.2778	114	114.2778	33.8767	148.1545	86.0111	234.1656	65	-
	공급세대합계							516	44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임.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 10%범위

구분	84A		84B		84C		84D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3	15	-	-	-	-	-	-	3	15	
장기복무 세대군인	3	15	-	-	-	-	-	-	3	1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7	35	-	-	-	-	-	-	7	35	
중소기업 근로자	7	35	-	-	-	-	-	-	7	35	
장애인	경기도	9	45	2	10	1	5	2	10	14	70
	서울	4	20	-	-	1	5	-	-	5	25
	인천	4	20	-	-	1	5	-	-	5	25
	계	17	85	2	-	3	15	2	-	24	120
합계	37	185	2	10	3	15	2	10	44	220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모집공고(예정)일	2025.12.19.(금) (예정)	일간신문 및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홈페이지 (https://www.신일비아프크레스트.com/)
건본주택 개관(예정)일	2025.12.24.(수) (예정)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특별공급 접수(예정)일자	2025.12.29.(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청약 (https://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2026.01.07.(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모집공고 확인)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자격요건제외)
 -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체대군인	「체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체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

예비 당첨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자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특별공급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요약 안내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최종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정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자료로, 향후 승인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사항은 관계법령·입주자모집공고·관할기관과 지자체 고시에 따릅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대표번호(☎1833-8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명단을 2025.12.24.(수) 16시 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분양문의 : 1833-8828
- 홈페이지 : <https://www.신일비아프크레스트.com/>
- 견본주택 약도

